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3. 20(목), 13: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동욱, 김창준, 박경립, 이강근, 이수곤,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심의 25건 : 원안가결 10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6건, 보류 7건
  - 검토 2건 : 원안가결 2건
  - 보고 1건 : 원안접수 1건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안전경비원 근무초소 설치	공개
2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물탱크실) 용벽설치 및 위험목 제거	공개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3차)	공개
4	서울 홍인지문 주변 건축물 용도 변경	공개
5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공개
6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증축	공개
7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8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임도 개설(2차)	공개
9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교차로 개량공사	공개
10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신축	공개
11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2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공개
13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다가구주택(335-5) 신축	공개
14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다가구주택(335-8) 신축	공개
15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근생 및 주택(335-9) 신축	공개
16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공개
17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나한전 및 화장실 증축 등 공사	공개
18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임도 개설	공개
19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2차)	공개
20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주변 유스호스텔 신축(2차)	공개
21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2차)	공개
2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양수펌프 및 용수관로 설치	공개

23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4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기숙사 신축	공개
25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후원채·기와불사 접수처 건립 및 만세루 구조변경	공개
<b>【검토사항】</b>		
26	양산 통도사 영산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27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b>【보고사항】</b>		
28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니불좌상 주변 숲가꾸기(택벌) 및 조립, 버섯·산채 재배</li> <li>-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허가사항 변경)</li> <li>-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2차)</li> <li>-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기간 연장)</li> </ul>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3-001

### 1.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안전경비원 근무초소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안전경비원 근무초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안전경비원 근무초소를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신륵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안전경비원 근무초소 설치
    - 한옥형 감시초소 : 1동(10㎡)

####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중요 목조문화재(제180호) 신륵사 조사당 안전경비원 근무초소로 설치된

기존 명부전 옆의 철제 컨테이너가 노후화되고, 정부합동 안전점검시 안전경비원 감시초소 근무환경과 전통사찰 미관 개선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사찰 내방객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계획서를 제출함.  
※ 감시초소 설치위치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록사 측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설치위치는 현 근무초소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2.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물탱크실) 옹벽설치 및 위험목 제거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물탱크실) 주변 옹벽 설치 및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물탱크실)에 옹벽설치 및 위험목 제거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신륵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천송동 산113-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m
  - 사업내용 : 옹벽설치 및 위험목 제거
    - L형 옹벽설치 : L=29.2m, H=2.5~3.5m
    - 수목제거 : 6주
    - 수목이식 : 4주
    - P.Y.S 조립식 배수로 설치 : L=48.8m

####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본 사업은 신륵사 조사당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0년에 설치한 방재시설인 물탱크실 주변 임야가 2013년도 집중호우 시 일부 유실되어 2차 피해방지가 시급한 실정이며,
- 물탱크실 주변 소나무 등을 제거·이식하여 강풍 및 낙뢰로 인한 나무 전도에 따른 물탱크실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3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1.21)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2.20)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빅뱅경매에스앤비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상동 13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84-1번지 외 7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4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신축(총 11동)

- 건립개요

	1차('13.11.21)	2차('14.02.20)	금차	비고
건축면적	824.64m <sup>2</sup>	648.36m <sup>2</sup>	589.20m <sup>2</sup>	
건물동수	근린생활시설 (59.16m <sup>2</sup> ) 11동 단독주택 (57.96m <sup>2</sup> ) 3동	근린생활시설 (59.16m <sup>2</sup> ) 9동 단독주택 (57.96m <sup>2</sup> ) 2동	근린생활시설 (59.16m <sup>2</sup> ) 8동 단독주택 (57.96m <sup>2</sup> ) 2동	

- 신청부지 : 6,663m<sup>2</sup>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770m(주택), 6.805m(근생)

####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상기 신청지는, 여주시내 인근에 위치한 임야로서 지정문화재(창리, 하리 삼층석탑)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문화재와의 이격거리는 약80m 정도임.
- 지정문화재 방향에 수목 등으로 차폐수림 등을 조성토록 하면,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 4. 서울 흥인지문 주변 건축물 용도 변경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에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윤○○ 외 1인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4-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물 용도 변경
    - 기존건물 규모 : 지상 5층
    - 용도변경(층수) : 지상 5층(객실 11개)
    - 용도변경 내용 : 사무실 → 숙박시설(호스텔)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청) 의견

- 서울 흥인지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허가 신청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5.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백련사 사적비」 주변에 선차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차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수
- (2) 대상문화재 : 강진 백련사 사적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백련사
  - 지정일 : 2004. 01. 2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 안채
      - 건축면적(연면적) : 140.4㎡(140.4㎡)
      - 건축구조 : 목구조
      - 건축양식 : 팔작지붕, 겹처마, 굴도리 5량가

- 아래채
  - 건축면적(연면적) : 118.25m<sup>2</sup>(118.25m<sup>2</sup>)
  - 건축구조 : 목구조
  - 건축양식 : 팔작지붕, 홑처마, 굴도리 5량가
- 시설물공사
  - 석축공사 : L=148.1m, H=0.6~2.4m
  - 계단공사 : W=2m, L=2.7m, H=2.1m
  - 배수로공사 : W=0.3~1.5m, L=0.3~1.2m, H=80.1m
  - 담장설치 : H=1.2m, L=72.3m
  - 배수관설치(흡관) : D=1.0m, L=50m

#### 라.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의견

- 해당부지는 보물인 백련사 사적비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재 일부 받이며 대부분이 공터임. 사적비는 북쪽으로 약 21m 이격되어 있지만, 석축이 조성되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 6.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증축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81-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4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증축
    - 주택
      - 면적 : 87.54㎡(기존 76.37㎡, 증축 11.17㎡)
      - 구조 : 목구조
      - 층수 및 건물높이 : 1층 / 4.6m

- 사랑방
  - 면적 : 26m<sup>2</sup>
  - 구조 : 목구조
  - 층수 및 건물높이 : 1층 / 4.68m

#### 라.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의견

- 이번 신청지역은 이미 2012년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고 완료신고를 마친 곳임. 신축한 건물에 연접하여 37.17m<sup>2</sup> 면적의 주택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7.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보물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에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구역 제4구역 “최고높이 20m(5층) 이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명개발주식회사
- (2) 대상문화재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 소재지 : 광주 동구 지산2동 448-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광주 동구 지산동 715-2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673.23㎡(3,344.87㎡)
    - 건축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 건물높이 : 25.9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8.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임도 개설(2차)

###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보물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에 임도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임도를 개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2.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성군수
- (2) 대상문화재 : 홍성 고산사 대웅전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127번길 35-99
  - 지정일 : 1963. 09. 0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 사업내용 : 임도 개설
    - 총거리 : 1.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 0.7km)
    - 너비/두께 : 3m / 0.1m (40mm 자갈 다짐작업 실시)

**라. 지방자치단체(홍성군) 의견**

- 사업지역이 홍성 고산사 대응전(대광보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상변경 허가 신청.

**마. 현지조사의견(2014.03.05.)**

- 임도 개설이 고산사 진입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고산사 대응전에서 직접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산불피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며 기존지형을 유지하고 기존 인도가 존재하고 있어 확장시 큰 지형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9.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교차로 개량공사

### 가. 제안사항

충남 천안시 소재 국보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에 교차로 개량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차로 개량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천안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319-8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192번지일원(리도202호선)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교차로 개량(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 확장) 공사
    -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 : L=189m, B=6.5m, t=50mm
    - 도로확장 구간 : L=360m, B=6.5m, t=650mm
    - 절토 430㎡, 성토 835㎡, U형수로(400x500) 54m, 우수받이 2개, 집수정 2개
    - 가드레일 : 75경간

라. 지방자치단체(천안시) 의견

-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으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대상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0.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에 템플스테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봉정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96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18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물 신축
    - 대지면적 : 6,128㎡
    - 건축면적(연면적) : 94.5㎡(94.5㎡)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5량가, 팔작지붕)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7.26m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안동 봉정사 내 극락전, 고금당 등 인접지에 묘사채를 건립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하고자 하므로 관계서류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의 의견 등을 거쳐 현상변경 허가서류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1.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85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신청부지 : 980㎡
    - 건축면적(연면적) : 194.4㎡(194.4㎡)
    - 건축구조 : 조적조(ALC블럭), 금속기와(검정색)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66m
    - 절성토(H=2m이내) 부지조성 : 법면 줄때 및 거적덮기 144㎡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2.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에서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90-17, 285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농업용창고 신축
    - 신청부지 : 1,179㎡
    - 건축면적(연면적) : 194.4㎡(194.4㎡)
    - 건축구조 : 조적조(ALC블럭), 금속기와(검정색)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66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3.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다가구주택(335-5)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외 2인
- (2) 대상문화재 :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산16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335-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10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 신청부지 : 510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198.63m<sup>2</sup>(501.87m<sup>2</sup>)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최고높이 : 지상4층 / 17.9m

라. 지방자치단체(예산군) 의견

- 현상변경 처리기준안(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에 있는 고도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4.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다가구주택(335-8)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외 2인
- (2) 대상문화재 :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산16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335-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10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 신청부지 : 510㎡
    - 건축면적(연면적) : 201.6㎡(500.9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최고높이 : 지상4층 / 17.8m

라. 지방자치단체(예산군) 의견

- 건물 신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기준(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5.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근생 및 주택(335-9)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근생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외 2인
- (2) 대상문화재 :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산16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33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1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203.58m<sup>2</sup>
    - 연면적 : 388.0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11.3m



라. 지방자치단체(예산군) 의견

-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고도인 8m, 경사지붕일 경우 12m로 설계변경.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6.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군위군 소재 보물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5.16) : 부결
  - 도지정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윤○○
- (2) 대상문화재 :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8길 21-1, 대율사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85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5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변경사항 : 대지 내 위치 변경

구 분	1차('13.05.16, 불허)	금차
건축면적(연면적)	96.24m <sup>2</sup> (96.24m <sup>2</sup> )	96.24m <sup>2</sup> (96.24m <sup>2</sup> )
구 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및 최고높이	1층 / 6.34m	1층 / 6.34m
평면모양	역ㄱ자형	ㄱ자형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경상북도 의견에 따라 처리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17.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나한전 및 화장실 증축 등 공사

###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에 나한전 및 화장실 증축과 기존 석탑 이전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나한전 및 화장실 증축과 기존 석탑 이전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수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강화 정수사 법당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50m
  - 사업내용 : 나한전 및 화장실 증축, 기존석탑 이전
    - 나한전(면적: 63.0㎡, 19.05평) 1동 증축
    - 화장실(면적: 30.37㎡, 9.18평) 1동 증축
    - 기존석탑(현대식-면적: 3.61㎡, 1.09평) 1기 이전

라. 지방자치단체(강화군) 의견

- 위 신청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종합정비를 통해 전통사찰의 위상을 높이고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8.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임도 개설

###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에 임도개설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임도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 (2) 대상문화재 :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2번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0m
  - 사업내용 : 임도 개설
    - 임도개설 : L=2.20km(B=4.0m)

### 라. 지방자치단체(거창군) 의견

-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임도개설 공사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9.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2차)

###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1.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합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88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30m
  - 사업내용 :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 제방공사 : 4개소
    - 공원조성 : 1개소



- 보 개량 : 1개소(기존 보파손 개량)
- 징검다리 : 1개소

#### 라. 현지조사의견(2014.03.17.)

- 삼층석탑 주변의 하천 정비부지는 석축 등 일부 경관저해 요소가 있으나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원조성 부지는 하천 건너편 공지로 근래에 기존 공장을 철거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발굴조사 시행 후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탑 주변의 시야가 트여있는 상황임.
- 공원부지는 탑으로 들어오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과 조경으로 인해 탑의 인지도를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탑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한 조정이 필요함.
- 현 주차장 부지의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후 유적의 성격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하천 정비는 지형 변화가 크고 옹벽 등이 발생하여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석탑 보호구역은 하천에 접하여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탐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석탑 주변의 탐방 여건과 석축에 대한 보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지조사 의견에 따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20.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주변 유스호스텔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6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2.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영원무역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2-20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042-3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383m
  - 사업내용 : 유스호스텔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262.49㎡(14,038.22㎡)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3층, 지상12층 / 45m

#### 라. 현지조사의견(2014.03.14.)

- 신청부지 주변에는 1층~4층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근래에 신청부지와 인접하여 9층의 근생건물이 신축되었고, 창녕시의 중심지역으로 도시화가 진행중인 상황임.
- 술정리 동 삼층석탑, 창녕 석빙고 등에서는 기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술정리 서 삼층석탑의 경우,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서탑에서 보일 수 있으나 신청부지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창녕시의 중심 대로에 접해 있고, 신청부지와 사이에 기존 건물이 있어 시야가 일부 차단되며, 근래에 신축된 9층 건물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1.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6구역(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4.02.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주)그린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4번지

○ 지정일 : 1970. 06. 24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55 외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250m

○ 사업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 주건축물(공동주택) / 부속건축물(발전기실, 펌프실) : 2동 /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1,317.35㎡(11,969.8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13, 지상15층 / 44.6m

#### 라. 현지조사의견(2014.03.14.)

- 신청부지 주변에는 1층의 주택이 일부 자리 잡고 있으며, 신청부지는 현재 전답으로 이루어진 상황임.
- 술정리 동 삼층석탑에서는 거리가 멀고 기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술정리 서 삼층석탑의 경우, 신청부지와 서탑 사이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보이는 위치로 13층과 15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원안가결 1명

## 2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양수펌프 및 용수관로 설치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양수펌프 및 용수관로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양수펌프 및 용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번지
  - 지정일 : 1995. 06.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9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78m
  - 사업내용 : 양수펌프 및 용수관로 설치
    - 집수구1개소, 유공관 매설(L=60.0m), 용수관로부설(L=340.0m)

### 라. 지방자치단체(울주군) 의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대곡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 펌프 설치 및 용수관로 부설로 인하여 금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설 최소화가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23.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번지
  - 지정일 : 1973. 05.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84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31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2동)
    - 건축면적 : 126.35㎡(A동:100.35㎡, B동:26.00㎡)
    - 건축높이 : 지상1층(6.5m)
    - 지붕형태 및 구조 : 경사지붕, 조적식



**라. 지방자치단체(울주군) 의견**

- 단독주택 1층/2동을 신축하려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환경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4.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기숙사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보물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최고높이 7.5m이하(전통한옥에 한함)”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마애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103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30m
  - 사업내용 : 기숙사 신축
    - 대지면적 : 2,319m<sup>2</sup>
    - 건축면적 : 353.08m<sup>2</sup>
    - 연면적 : 931.71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1층, 지상2층 / 11.7m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5.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후원채·기와불사 접수처 건립 및 만세루 구조변경

###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에 후원채·기와 불사 접수처 건립 및 만세루 구조변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후원채·기와불사 접수처 건립 및 만세루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국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번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20~74m
  - 사업내용 : 후원채 및 기와불사 접수처 건립, 만세루 구조변경
    - 후원채 : 건축면적 129.6㎡, 일반목구조, 팔작지붕, 한식기와, 높이 7.63m
    - 기와불사접수처 : 건축면적 4.41㎡, 일반목구조, 박공지붕, 한식기와, 높이 3.63m

- 만세루 구조변경 : 종무소(면적: 26.46㎡), 창고(면적: 26.46㎡), 통로(면적: 20.79㎡), 일반목구조, 팔작지붕, 한식기와, 높이 8.73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3-026

## 26. 양산 통도사 영산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통도사 영산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양산시 소재 「통도사 영산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03호 「영산전(靈山殿)」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지정일 : 1982. 08. 0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양산 통도사 영산전(梁山 通度寺 靈山殿)
  -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중건
  - 규모 : 정면 3칸, 측면 3칸
  - 구조 : 목조 와가
  - 수량 : 1동
  - 양식 : 맞배지붕, 다포식, 겹처마

- 보호구역 : 35,052.2m<sup>2</sup>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등)

**라. 현지조사의견(2013.06.21.)**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 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영산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 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영산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서명 또는 인)</div>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통도사는 영축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보사찰 중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와 가사를 봉안 하고 있는 금강계단이 있는 불보사찰이다.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도 명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변에 여러 암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고려시대에 들어 사역이 확장되었고 임란을 겪으면서 많은 전각들이 소실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들면서 많은 전각들이 중수되거나 중창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전의 내력은 「靈山殿天王門兩重創丹牘記文」에서 대개를 살필 수 있다. 康熙 52년 癸巳年(숙종 39년;1713년) 중추에 화재에 의해 영산전과 천왕문이 소실되었다 한다. 일 년 후 금강산에서 재목을 확보하고 1714년 호남에서 단청안료를 구했다고 기록하였고 기문은 康熙 55년 丙申年(숙종 39년;1716년)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암막새 명문에 강희 53년 甲午(1714년)라는 기록은 기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 배치 ;

통도사는 상, 중, 하의 위계에 따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상로전권역과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로전 권역, 영산전을 중심 전각으로 구성되는 하로전 권역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치방법이다. 따라서 영산전은 하로전 권역의 중심전각이며 좌우로 약사전과 극락보전을 거느리고 있으며 대향하여 만세루가 자리하고 있다.

#### 건축 :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평면을 바탕으로 외3출목 내4출목 공포를 얹은 다포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면 기단은 1단 지대석 위에 장방형 면석을 얹고 상부에 갑석으로 마감한 가구식기단이나 경사진 대지 위에 기단이 조성된 관계로 양측면과 배면은 1단 면석 위에 갑석을 얹어 처리하였다. 정면에 설치된 4단 계단은 좌우에 소매석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아래 1단은 중수시 다소 변경된 듯하다. 기단에 사용된 석재는 고재로 볼 수 있으나 소매석의 형식 및 기단 조성방법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수법을 다소 유지하고 있으나 초창 당시의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로 기단의 석재 치석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양측면 어칸 가운데 초석으로 판단되는 초석이 남아있어 중수시 평면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평면구성은 9칸통칸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양측면벽에 기대어 불단을 조성하였다. 우측에 석가모니 독존을 모시고 맞은편 벽에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벽화로 그려두고 하부에 불단을 조성하였다.

정면창호는 어칸과 협칸에 걸쳐 설치하였고 배면에도 쌍여닫이문을 매칸 설치하였다. 정면은 모두 4분합문이나 어칸부분은 가운데 2짝만 교살문형식이고 그 외는 모두 격자살문형식으로 어칸의 중요성을 표현한 듯하다. 배면은 전면과는 달리 세살문형식이나 어칸부분만 하부에 궁판을 두었다.

기둥은 모두 민흘림을 둔 원형으로 치목하였고 양측면에는 고주를 2본씩 두어 상부구조를 얹었다. 지붕이 맞배인 관계로 양측면 평방은 측면고주와 결구되지 않은 단평방을 사용하였으며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설치하였다.

다포계 공포의 구성은 정면과 배면을 달리하였다. 정면은 매칸 주칸포를 3구씩 설치한 반면 배면은 2구씩 얹어 정면성을 강조한 듯 하나 이로 인해 배면의 창방에 하중이 다소 과하게 작용하면서 배면의 창, 평방재가 정면보다 다소 과하게 휘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공포의 형식은 외3출목, 내4출목으로 내출목이 외출목보다 1단이 많은 일반적 다포계공포과 동일하다. 외부살미는 모두 양서형으로 내민길이는 짧으나 힘차고 연화와 연봉으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내부는 살미단이 직절된 교두형이며 4제공 외부는 단부를 3분두로 치목하였으나 내부는 교두형이다. 4제공 위에는 운공을 얹어 외목도리를 받게 하였고 내부는 삼분두로 모양을 잡고 내목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공포 위에 설치된 상부가구는 5량가구법이나 다포계인 관계로 내, 외목도리를 두었고 양측면은 고주를 2본씩 설치하여 중도리와 종량이 결구되었다. 대량과

종량은 자연상태의 재목을 목재의 형상대로 다듬어 사용하였고 처마도리와 결구된 듯하다. 종량은 3분변작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고 포대공형식으로 종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도리를 받는 대공은 좌우가 상이하다. 좌측은 파련대공형식이고 우측은 제형판대공형식으로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반자는 2단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어칸이 양협칸보다 높게 하여 어칸의 중심을 두는 것이 다포계 반자구성의 상례이나 여기서는 불단이 동측면에 설치된 관계에서 기인하였는지 측면 어칸부분을 높게 하고 협칸부분을 낮게 하였다. 반자의 모양은 소란대를 둔 소란반자이며 교차되는 반자틀 부분에 화문을 조각하여 붙였으며 단청의 문양과 색감을 달리하여 매우 화려하게 장엄을 베푼 듯하다.

### 종합의견

통도사 하로전 권역에 주전으로 자리하고 있는 영산전은 화재 후 재건된 건축물로서 중수년대가 확실하며 영산전 벽화는 보물 171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중수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단 배치 및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내용과 「석씨원류응화사적」 내용을 벽화로 구성하기 위한 벽면구성, 반자의 구성 등에서 영산전의 건축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용도에 맞추어 계획된 건축수법이 돋보이며 18세기 중기에 다포계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어 벽화와 더불어 건축물도 보물로 지정 보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 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영산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 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영산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서명 또는 인)</div>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문화재 지정조사서

1. :
2. : 203
3. ( ) :
4. : 583
- 5.

영산전은 하로전(下爐殿)의 중심 건물이다. 남향한 영산전의 전방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동서에 놓여 있고, 그 중앙 지점에는 신라 말기의 3층석탑 1기(보물 제 1471호)가 있다. 영산전의 창건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었다가 중건된 후 다시 1713년 다시 화재로 전소(全燒)되었다. 통도사정보박물관에 남아있는 “靈山殿天王門兩重創丹牘記文(1716년)”의 기록에 따르면 1714년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통도사 사적기에 1704년 松谷大師가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1714년의 착오로 보임)

1713 ( 39)

, 1714 任間淸印, 松谷正眼, 楓岩朗日, 禪岩致源 4 大禪師가 (募捐)

33명의 목수와 天悟, 最熏, 寂照, 智淳 등 15명의 畫僧이 참여하여 중건되었음이 밝혀졌다. 1715 1716 .

‘ 康熙五十三年銘(1714 ) .

1734 , 1736 , 1775 ,

1792 指演, 彦一 . 1714 ,

1792 . <견보탑품변상도>와 『석씨원류응화사

적』 등의 제작시기는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로는 명문자료와 양식적인 비교를 통해 잠정적으로 1716년 중건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6. . .

3 , 3 .

(石階)가

2

, 1 2

2006 12

벽체와 창호는 불전 내부의 채광과 신앙 행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밖에 내외부 벽화와 탕화 등의 장엄과도 관련이 있다. 영산전은 정면과 배면에만 창호를 두고, 양 측면은 창호 없이 벽을 쳐서 폐쇄했다. 정면에는 매칸 사분합 정자살문이, 배면에는 두 짝의 띠살문이 달려있다. 정면 주간는 어칸이 5.1m, 퇴칸이 5.0m로 약 1:1의 구성비를 보인다.

통도사 영산전은 동쪽 측벽 가까이 불상이 놓여 있어 거기에 창호를 시설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불상이 바라보는 서측 벽에도 창호를 시설하지 않고 모두 벽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영산전 내부로 출입하려면 다른 불전과 달리 정면 좌우의 퇴칸을 이용해야 한다. 영산전의 경우 정면과 배면에 창호를 시설하여 불전 내부의 채광 효과가 극대화했다. 이는 내부에 모신 벽화와 탕화를 포함한 불전 내부의 장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산전의 큰 특징은 전면과 배면 공포의 공간포 수에 차이에 있다는 점이다. 정면에는 주상포 4구, 공간포 9구 등 총 13구의 공포가 배치되어 있으나 배면에는 주상포 4구, 주간포 6구 등 총 10구의 공포가 놓여 있다. 영산전 처럼 정면 매 칸에 3구씩의 공간포를 두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맞배지붕 불전인 충북 괴산 각연사(覺淵寺) 대웅전도 주간에 3구의 공간포를 둔 사례임) 이처럼 영산전 정면에 공간포가 많은 것은 주간이 넓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 같은 공간포와 포벽의 숫적 증가는 불전의 장식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영산전의 경우 전면에는 12개의 많은 포벽이 있으나 배면에는 9개 포벽만 있다. 배면보다 많은 수의 공포와 포벽을 정면에 둔 것은 정면성과 불전

의 장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내 주요 불전의 가구 및 공포형식 비교

불전 명	가구 출목, 포작 수	첨차	제공 살미	
			외단	내단
대웅전 1644년 중건	1고주 9량가 외3출목 7포작 내4출목 9포작 팔작지붕	교두형	1,2,3제공: 양서형 4제공:삼분두에서 수서형태로 변하는 과도형태 5제공: 초공	주상포 3제공:교두형 4-5제공 :운궁형 공간포 1-4제공 : 교두형 5제공 :삼분두에서 수서형태로 변해가는 과도형
영산전 1714년 중건 1792년 중수	5량가 외3출목 7포작 내4출목 9포작 맞배지붕	교두형	1, 2, 3제공: 양서형 4제공 : 삼분두에서 수서형태로 변해가는 과도형, 5제공 : 초공  장식성 1-2제공: 양서 위 연꽃, 3제공 양서 위 연봉 조각	1-4제공: 교두형 5제공: 삼분두에서 수서형태로 변해가는 과도형
대광명전 중건시기 불명 1725 중수	1고주 7량가 외3출목 7포작 내4출목 9포작 팔작지붕	교두형	1,2,3제공 : 양서형 4제공 : 수서형 5제공 : 초공	1제공 : 연화, 2제공 : 연밥, 3제공 : 연화+연밥, 4제공 : 연봉 조각

外3出目, 內4出目 ,

,

.

18

. 3

, 雲工

가

가

가

(曲律)

가

, 4

(龍頭)

가 2 5 가 , 2 5 가  
가 前後 3

가 (十字)

가 ,

前後 丹青

영산전은 특히 벽화가 매우 주목되는데, 외벽의 그림은 풍화(風化)를 받아 많이 훼손되었으나 내벽의 그림은 잘 남아있다. 특히 내부 벽화의 국내 유일의 다보탑을 비롯하여 상하단 포벽에 “석씨원류응화사적”에 따른 높은 수준의 벽화가 남아있다. 건물의 내부에는 우물천정을 조성하고 고식(古式)의 연화문(蓮花紋) 또는 보상화문(寶相華紋)으로 단청하였다. 대들보에 그린 황룡, 청룡의 그림이 매우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楊柳觀音 羅漢, 山水 가 ,  
가 과 영산회상도(보물 제1353호)를 ,  
(보물 제1041호)

1775 ( 51) (佛畫)

, 현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 >가 『

』 「 」 ,  
「 」 , 1716  
1800 (畫僧) (指演)

4m 2.3m ( ) 가 가  
分半座 二佛 竝座



(來迎)

2005 8

(元興寺)

가 2

2007 10 . 그림은 아랫부분이 손상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태는 좋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같은 『법화경』에 의한 석가모니와 다보여래를 표현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건축으로 표현되었을 뿐 회화작품으로 표현된 것은 영산전 벽화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7.

가

1714 ( 30)

1715

1716

1714

5 , 3

(石階)

18

舊

外3出目, 內4出目

가

가

18 (1714 )

雲工

가

, 4

龍頭

가 5 가 ,

2 5 가

가

2 5 가

가 (十字)

18

, 가  
二佛竝坐

가 , ( 1041 ) 18

가 가 가

2013.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 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영산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영산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서명 또는 인)</div>				

문화재청장 귀하

## 문화재 지정조사서

○ :

○ :

○

영산전은 통도사 하로전(下爐殿)의 중심 건물로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그 전면의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동서에 놓여 있다. 또한, 영산전 전면 마당에는 신라 말기의 3층석탑이 보물 제 14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산전의 창건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었다가 중건된 후 다시 1713년 다시 화재로 전소되었다. 통도사성보 박물관에 남아있는 “靈山殿天王門兩重創丹牘記文(1716년)”의

1713 ( 39) , 1714 任間淸印, 松谷正眼, 楓岩朗日, 禪岩致源 4 가 (募捐) 33명의 목수와 天悟, 最熏, 寂照, 智淳 등 15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15

1716 . , 통도사사적기에 1704년 松谷大師가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1714년의 착오로 판단된다. 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록은 ‘康熙五十三年銘(1714 )

. 1734 , 1736 , 1775 , 1792 指演, 彦一 . 1714 , 1792 .

○ . .

3 , 3

가 .

2



,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하단 포벽에 “석씨원류응화사적”에 따른 높은 수준의 벽화가 남아있다. 건물의 내부에는 우물천정을 조성하고 고식의 연화문 또는 보상화문을 단청하였다. 대들보에 그린 황룡, 청룡의 그림이 매우 화려하고,

가 , 과 영산회상도(보물 제1353호)를 , (보물 제1041호) 1775 ( 51) (보물 제1041호) .

○

1714 ( 30) 1715 1716 . 5 , 3 . , 가 18 . 가 . 가 , 가 가 가 2013. . .

## 27.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통도사 대광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양산시 소재 「통도사 대광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94호 「통도사대광명전(通度寺大光明殿)」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지정일 : 1974. 0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梁山 通度寺 大光明殿)
  -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중건
  - 규모 : 정면 5칸, 측면 3칸
  - 구조 : 목조 와가
  - 수량 : 1동
  - 양식 : 팔작지붕, 다포계, 겹처마
  - 보호구역 : 35,052.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등)

라. 현지조사의견(2013.06.21.)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 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서명 또는 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통도사는 영축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보사찰 중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와 가사를 봉안 하고 있는 금강계단을 보유하고 있는 불보사찰이다.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도 명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80여동의 전각이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 산내에는 20여개 암자들이 있다.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며 고려시대에 들어 사역이 확장되었고 임란을 겪으면서 많은 전각들이 소실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들면서 많은 전각들이 중수되거나 중창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광명전은 종로전 권역의 중심 전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도사 사전에 의하면 대광명전은 1725년(영조 원년)에 축환대사가 중수하였다고 전하나 1759년 기록현관인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에 따르면 丙子年(1756)十月二十日 저녁 화재로 인해 法堂四位僧寮四所庫舍十間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 후 戊寅(1758)正月初七日 공사를 시작하여 九月二十六日 營建하였고 己卯(1759)四月에 단청을 시작하여 六月二十七日날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대광명전 암막새 명문에 乾隆二十三年(1758)이라는 조성기로 보아 중수년대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배치 ;

대광명전은 종로전 권역의 주전으로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앞쪽으로 14세기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용화전과 18세기 건립된 관음전이 축을 이루고 있으며 좌우에 여러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쪽의 용화전과 근접하여 전면 공간이 매우 좁고 주변의 건축물 또한 근접하여 건립되어 전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외부에서 대광명전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건축내용 ;

대광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외3출목, 내4출목 다포계 공포이며 겹처마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주간살은 어칸을 협칸이나 퇴칸보다 크게 설정하였고 내진주를 두고 후불벽을 조성한 다음 불단을 설치하였다. 삼신불을 모시 위하여 어칸과 협칸 3칸에 걸쳐 불단을 조성한 듯하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기단은 전면만 가구식기단의 형태이고 그 외 삼면은 자연석기단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진에서 전면도 자연석 기단으로 나타나 기단이 다소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로 특히 우주초석은 매우 크다. 기둥은 내,외진주 모두 약한 흘림을 둔 원형으로 치목하였고 약하게 귀솟음도 두었다.

창호구성은 전면은 어칸부분에만 3분합문을 두고 협칸과 퇴칸은 쌍여닫이 설문형교살로 치장하였다. 그러나 배면은 정면과는 달리 어칸과 양협칸에 쌍여닫이 세살문을 설치하였으나 다소 변형된 듯하다. 그리고 양측면은 전면칸에 쌍여닫이 세살문과 교살문이 있으나 세 살문의 좌측창호는 변형된 듯하다.

다포계 공포구성은 전후 어칸부분만 주간포를 2구씩 설치하고 협칸 및 퇴칸은 1구씩 설치하였다. 양측면도 주간포 설치방법은 동일하다. 살미의 형태는 3제공까지는 양서형으로 길게 모양을 내었으며 4제공은 수서형으로 상부는 수평으로 치목하고 단부만 수서형으로 처리하면서 아래에 연봉을 두었다. 내부쪽 살미단은 연봉과 연화를 두었고 외목도리를 받는 운공은 외부는 봉두로 내부는 보아지 형식으로 초각하여 대량을 받도록 하였다. 귀한대 공포는 추녀방향으로 전면은 용두로 장식하였고 배면은 용미로 처리하여 조선 후기 장식성향이 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면 어칸 좌우기둥 위에 용두장식을 하면서 안초공 형식으로 기둥과 평방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배면부분 살미의 모양은 4제공과 운공만 동일하고 나머지 제공은 내외 모두 단부를 간략하게 교두형으로 처리하였다.

상부가구법은 7량구조로 다소 특이하다. 상중도리와 중도리, 종도리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잡으므로 단연과 장연이 엇걸이 할 수 없고 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하여 장연 뒷뿌리 상부에 적심장목을 엮고 그 위에 단연을 엮어 일견 덧연의 구조와 유사하게 연목을 엮었다. 종량 받침은 포대공으로 처리하고 반자 상부는 동자주 대공으로 종종량과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반자는 층급을 두었다. 어칸과 협칸은 중도리에 걸쳐 반자를 설치하고 외진은 내출목도리에 기대어 설치하였다. 불단은 어칸부분을 제외 한 양협칸 불단은 근년에 새로 조성한 듯하며 불단 상부는 운궁형 단집을 설치하고 장엄을 베풀었

다. 단청과 포벽불화는 18세기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장식성이 강한 매우 화려한 수법을 지니고 있다.

## 종합의견

대광명전은 중수년대가 확실하고 조성수법 역시 18세기 장식성향이 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기단, 창호 및 불단에서 다소 변형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화재 전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나 수법들은 없으나 기둥배열 방법에 따른 상부 구조 수법이나 공포의 구성수법 및 단청, 불화 등 장식수법과 함께 18세기 다포계 건축물의 기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보물로 지정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 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 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서명 또는 인)</div>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보물 지정조사서

1. : (大光明殿)

2. : , 94

3. ( ) :

4. : 583

5.

(中爐殿)

(龍華殿), (觀音殿)

(藏經閣), (開山祖堂), (世尊碑閣)

5

사전(寺傳)에는 1725년(영조 원년)에 축환대사(竺環大師)가 대광명전(大光明殿)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1759년에 만든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에는 “1756년(丙子) 10월 21일 밤 자시(子時)에 화재가 발생하여 법당 4위(法堂四位), 승료(僧寮) 4, 고사 10칸(庫舍十間)이 회진(灰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1758년(戊寅) 1월 초7일 공사를 시작하여 3법당(三法堂)을 9월 26일 중건하고 내외 장식까지 마쳤으며, 이듬해 1759년(己卯) 4월 초에 시작하여 6월 26일까지 대광명전 단청(丹靨)을 마치고, 비로불상(毘盧佛像), 영산전불상도금(靈山殿佛像鍍金), 후불탱(後佛幀)을 동시에 완성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광명전은 1756년에 화재로 불탄 후 1758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건륭(乾隆) 23년(1788년)명 명문기와의 사용된 것으로 보아 1788년에 변화공사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후 수리연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근현대에는 1968년과 1997년에 변화한 바 있고, 2010년 연목 이상의 해체수리와 변화공사를 한바 있다.

(草花文),

(龍頭)

3 4 7 , 9 , 가  
1 7 가

6. . .

통도사 대광명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5 , 3  
가 건설한 조선후기(18세기 중엽)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기단은

가 ( )

가 .

가 4

(前面)

가

1 7 가 가

가

( ), 3

3

( ) ( )

ㄱ

(柱上)

(柱間)

3 , 4

통도사내 주요 불전의 가구 및 공포형식 비교

불전 명	가구 출목, 포작 수	침차 형태	제공 살미	
			외단	내단
대응전 1644년중건	1고주 9량가 외3출목 7포작 내4출목 9포작 팔작지붕	교두형	1,2,3제공: 양서형 4제공 :삼분두에서 수서형 태로 변하는 과도형 5제공: 초공	<b>주상포</b> 3제공: 교두형 4제공-5제공 : 운궁형 <b>공간포</b> 1제공-4제공 : 교두형 5제공 :삼분두에서 수서 형으로 변해가는 과도형
영산전 1714년 중건 1792년 중수	5량가 외 3출목 7포작 내 4출목 9포작 맞배지붕	교두형	1,2,3제공: 양서형 4제공: 삼분두에서 수서형 태로 변하는 과도형태, 5 제공: 초공  <b>장식성</b> 1-2제공: 양서 위 연꽃, 3 제공 양서 위 연봉 조각	1-4제공: 교두형 5제공: 삼분두에서 수서 형으로 변해가는 과도형
대광명전 1758 중건	1고주 7량가 외 3출목 7포작 내 4출목 9포작 팔작지붕	교두형	1,2,3제공 : 양서형 4 익공 수서형 5 운공	1제공: 연화, 2제공: 연 밥, 3제공 :연화+연밥, 4 제공: 연봉을 조각

18

3

( )

(雲工)

(蓮花)



(蓮花)

가

3

4

(龍尾)가

(龍頭)가

(層級)

(井)

(草花紋)

(龍頭)

18

가

“水, 海, 河, 江”

7.

3 , 4 18 7 9 , 1 7 가 가  
, 가 (層級)

가

18

3

雲工

(鳳頭)

(蓮

花)

가

가

18

18

가 가

2013년 월 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3. 06.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4 년 02 월 10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div>				
<b>문화재청장 귀하</b>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보물 지정조사서

○ : (大光明殿)

○ : , 94

○

(中爐殿)

5

사전(寺傳)에는 1725년(영조 원년)에 축환대사가 대광명전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1759년에 만든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에는 “1756년(丙子) 10월 21일 밤 자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법당 4위, 승료 4, 고사 10칸이 회진(灰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1758년(戊寅) 1월 초7일 공사를 시작하여 3법당을 9월 26일 중건하고 내외 장식까지 마쳤으며, 이듬해 1759년(己卯) 4월 초에 시작하여 6월 26일까지 대광명전 단청을 마치고, 비로불상, 영산전불상도금, 후불탱을 동시에 완성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광명전은 1756년에 화재로 불탄 후 1758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건륭 23년(1788년)명 명문기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1788년에 번외공사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 . .

통도사 대광명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5 , 3  
가 건설한 조선후기(18세기 중엽)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기단은

가

1 7 가 가

가

3

3 , 4

18

3 4

(龍頭)가

가

18

가

○

(中爐殿)

18

가

18  
가 , 18  
가 가 . 가

2013년 2월 10일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3-028

2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 평택시 소재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숲가꾸기(택벌) 및 조림, 버섯·산채 재배 등 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소 계		4 건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경기 평택 (박○○)	○ 숲가꾸기(택벌) 및 조림, 버섯·산채 재배 - 숲가꾸기 사업 · 면적 : 0.6ha · 내용 : 가지치기(잡목제거), 불량목·피해목 제거 등 - 벌채 및 조림 · 벌채 : 3종, 26본, 8.33㎡ · 조림 : 3종, 160본, 1년생	허가 (문화재와 약 190m정도 이격되어 있고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됨)	'14.03.18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전남 나주 (이○○)	○ 근린생활시설 증축(허가사항 변경) - 연면적 : 증축67.28㎡→증축84.98㎡ (기존건물 899.28㎡, 3F) - 4층 평면 변경	허가 (기존 건물 3층에 4층으로 증축코자 현상변경 승인하였으나 금회 평면 변경과 면적증가 된 사항으로 문화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4.03.1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전남 나주 (이○○)	○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2차) - 대지면적 : 1,011㎡→987㎡ - 건축면적(연면적) : 356.6㎡(356.6㎡)→320.6㎡(320.6㎡) · 1동 : 104㎡ (변동없음) · 2동 : 252㎡→216㎡(-36㎡)	<b>허가</b> (기허가 면적보다 축소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4.03.18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북 성주 (박○○)	○ 단독주택 신축(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2.07.24~'13.07.23 - 변경 : '12.07.24~'14.12.18	<b>허가</b> (기허가된 사항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4.03.18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